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3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강일·양부남·장철민

채현일 · 김병기 · 김주영

김남근 • 허성무 • 한정애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의 전출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단서 중 "공 적자금상환기금에"를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생	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3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
	금으로의 전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일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	
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	
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	
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	
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 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 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 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u>공적자금상환기금에</u> 귀 속시킬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
급에